

◎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 2. 11.
개정 2018. 9. 20.
개정 2020. 12. 29.
전부개정 2022. 8. 17.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3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문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전문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 및 심의 한다.

1. 전문체육 주요 사업 방향 설정 및 심의
2. 전국 동·하계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3. 국제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5. 가맹단체 육성,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6. 우수선수선정 및 영입에 관한 사항
7. 신규 종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비 구입 및 지원과 전문체육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
9. 기타 전문체육 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간사 1인

②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본회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7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 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제7조 1항과 관련 하여는 제3기 위원회부터 적용한다.